

「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5년 7월 7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5년 7월 8일

라. 상정일자: 2025년 7월 16일

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기획조정실장 김 은 영

나. 제안이유

-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,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, 제2조, 제5조, 제6조)
-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12조)
-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~제17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제정조례안은

-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인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역계획 수립과 지역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은 법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나, 해당 상위법이 2016년에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, 본 조례 제정이 시의성을 결여한 채

이루어졌다는 점은 행정 대응의 미흡함을 드러낸 것으로 지적됨. 향후에는 상위법 제·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.

- 특히, 기존의 「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」를 근거로 구성된 구미시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본 조례안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통합한 것은 유사 기능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방지하고, 도시디자인 정책 전반에 대한 일원화된 자문·심의기구를 구성한 것으로 검토되어,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.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조례 시행 이후 도시디자인 관련 부서 간 유사 및 중복 기능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, 실질적 업무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협업 기반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. 또한,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구체성과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 보완과 실무자 대상 교육을 병행하고, 주민참여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실질적 참여 유도 및 정책 반영 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 략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